

제2499호
2017. 02. 0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7-10호 :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제2017-11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4
제2017-12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5
● 공 고	
제2017-82호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차매(폐차) 공고	6
제2017-93호 :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9
제2017-96호 : 2017년 중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10
제2017-10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제2017-102호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3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0호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17. 2. 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방지 지정내역

토 지 소 재 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지정 면적 (㎡)	비고
시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서울	중	만리동1가	57-4	학교	1,537.2	서울특별시 교육감		1,000	
서울	중	만리동2가	2	학교	16,118.4	서울특별시 교육감		500	

2.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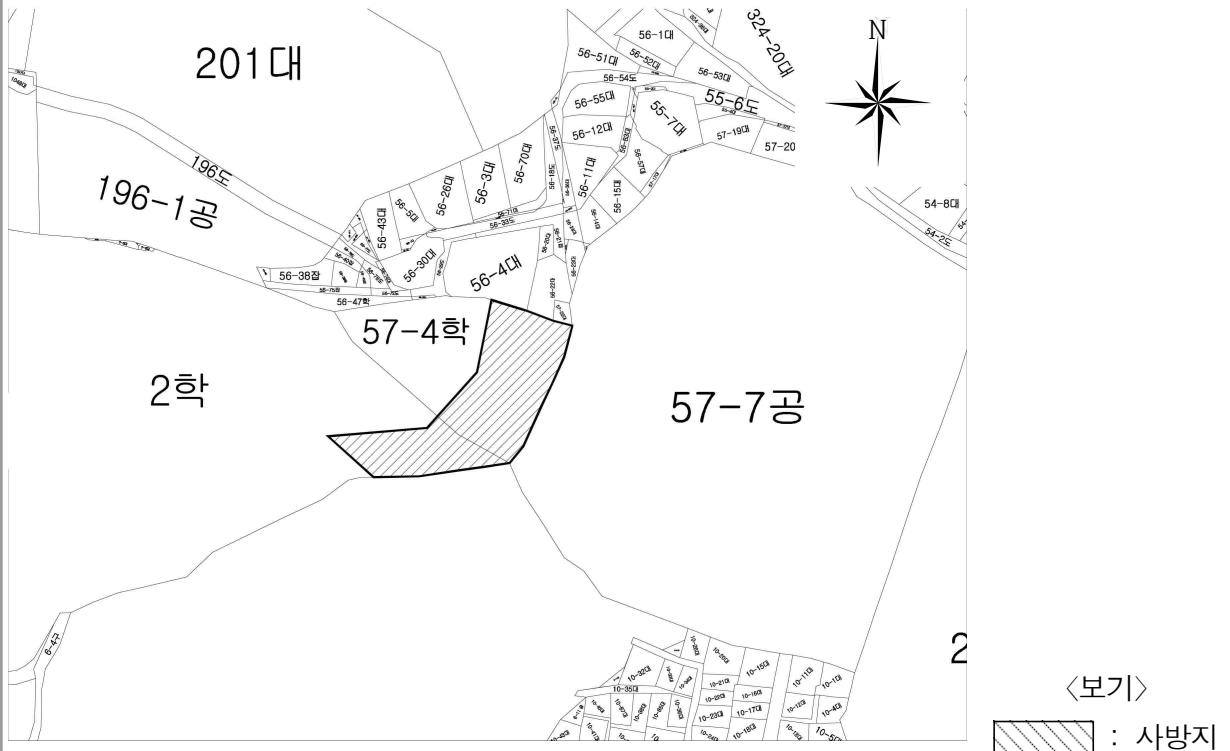
3. 지정사업 종류 : 산지보전사업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참조

5. 이해관계인은 우리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2017년 제1호

사방지지정구역도면



<지정내역>

토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57-4	학교	1,537.2㎡	1,000㎡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	학교	16,118.4㎡	500㎡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76-4 외 2 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6	2010.5.26.	필동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0)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2.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2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27 외 1건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48	2017.2.8.	건물멸실
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가길 15-3	2017.2.8.	건물멸실
3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길 10-4	2017.2.8.	건물없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0)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2.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82호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년 2월 9일 ~ 2017년 3월 10일(30일간)

2. 보관장소 : (주)중앙RDC (☎:02-992-4884, FAX:02-992-4806)

- 본 사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13

- 서울영업소 :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3길 109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17년 3월 11일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서울성북파2267 외 26대(이륜차량포함), 붙임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할 때에는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처리(폐차) 후 불이행에 대해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체 지지 않습니다.

라.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처리(폐차)대상자동차(이륜차)내역(2017.2.8.)

연 번	관리 번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장)
			성 명 (차명)	사용본거지		
1	2017- 이륜-72	서울성북파2267 (KMYBA8ADS7C000472)	이** (VJF125)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3길 **(보문동*가)	서울시 중구 퇴계로83길 40-8	“해당내역없음”
2	2016- 미상-247	GZ50E-1056501	RACING	미상	서울시 중구 퇴계로18길 63-1	“해당내역없음”
3	2016- 미상-267	KM4CE16A061104492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남산2호터널 내	“해당내역없음”
4	2016- 미상-269	SC125E*1001604*	미상	미상	서울 중구 청구로 1**	“해당내역없음”
5	2016- 미상-270	NC29-1100889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다산로28나길 **	“해당내역없음”
6	2016- 미상-293	LJEJCBP73CA101021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충무로68- 옥천**	“해당내역없음”
7	2016- 미상-297	1YSA2ADS4CO34670	FORTE	미상	서울시 중구 서애로5길 12-**	“해당내역없음”
8	2016- 미상-303	SB50M1663333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퇴계로8길101 (시범아파트관리사무소)	“해당내역없음”
9	2016- 미상-308	XS1P52QMI-B*08900019*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퇴계로8길101 (시범아파트관리사무소)	“해당내역없음”
10	2016- 미상-309	KM4CA13A7V1155587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약수역10번 출구 하나은행공중전화역	“해당내역없음”
11	2016- 미상-310	US05J-006745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약수역10번 출구 하나은행공중전화역	“해당내역없음”
12	2016- 미상-316	3KJ-7809590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퇴계로73길 50(신당동 251-1)에스로건 물	“해당내역없음”
13	2016- 미상-317	*910660095*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퇴계로73길 50 (신당동 251-1)에스로 건물	“해당내역없음”
14	2016- 미상-318	*LXMTCJPF9A0008747*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퇴계로73길 50 (신당동 251-1)에스로 건물	“해당내역없음”
15	2016- 미상-324	KM4CA14B331114548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신당역4번출구 자전거거치대	“해당내역없음”

연 번	관리 번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
			성 명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16	2016- 미상-326	KMYOGZ50GC143848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퇴계로8길 101(회현동시범아파트)	“해당내역없음”
17	2016- 미상-333	*LEHTCJ1728RO40182	RY125T-17	미상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열린민원실	“해당내역없음”
18	2016- 미상-337	LMWTAB5098B254892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해당내역없음”
19	2016- 미상-338	KMYVF125H3CO12893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해당내역없음”
20	2016- 미상-339	미상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해당내역없음”
21	2016- 미상-340	SB50M160881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해당내역없음”
22	2016- 미상-341	VS125E1057534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해당내역없음”
23	2016- 미상-342	GP125-305174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해당내역없음”
24	2016- 미상-343	*LXMTCJPFX90112161*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해당내역없음”
25	2016- 미상-344	VT125E1009948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해당내역없음”
26	2016- 미상-345	미상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해당내역없음”
27	2016- 미상-346	FX110-	미상	미상	서울시 중구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해당내역없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93호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8.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가. 부의안건 : 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구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계획안	2017년도 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3396-5012)
의견청취안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심재생과 (3396-5783)

나. 기타

-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3396-4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96호

2017년 중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하여 여성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중구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총사업비 : 25,000천원
2. 사업기간 : 2017. 4. 1. ~ 11. 30.
3. 지 원 액 : 사업별 6,000천원 이내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서울시 중구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
4. 대상사업 : 1개 단체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분 야	사 업 내 용
양성 평등 촉진	▶ 양성평등 문화 및 성주류화 확산 ▶ 지역사회 여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촉진 ▶ 일·가족 양립문화 확산 및 저출산 대응 ▶ 여성의 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여성의 안전 및 건강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안전 중구 만들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 여성의 건강관리 지원
취약계층 여성복지	▶ 장애여성, 한부모가정, 여성노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및 진로 교육
기타 양성평등 사업	▶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수

-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 중구에 소재하고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법인) 및 여성관련기관
- 신청 사업수 : 단체별 1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 제외 대상

- ❖ 일회성, 전시성 행사 성격의 사업
- ❖ 단체홍보, 법인(단체)설립 기념행사, 법인(단체)월례행사 등 친목 관련 사업
- ❖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일반 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 임대료, 회원 피복 구입비, 기념품·시상금 등 선심성 경비)가 주된 사업
- ❖ 국가, 타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는 사업
-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 단체
-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
-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 단체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2. 7.(화) ~ 2. 2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중구청 여성가족과(1층) 여성정책팀

7. 신청서류

-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신청서 15부
- 지원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5부
-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및 회칙(정관)사본 각 15부
- 법인(단체)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각 15부
- 법인(단체) 임원 및 회원명단 각 15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 참고사항

- 신청서식은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고시·공고」란 게시
- 신청서류는 A4용지 작성 및 제출서류 일체 전자파일로 별도제출 (담당자 e-mail : wh840107@junggu.seoul.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법인(단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8.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및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
- 심사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 시 신청법인(단체)의 사업계획서 발표 (PT준비 : 5분 이내)
- 결과발표 : 2017. 3. 15.(수) (예정)
 -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게시 및 개별통보

9.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 교부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

10. 기 타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02-3396-5403)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휴 대 폰	
		팩 스		E-mail	
사업분야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천원)					
총 사업비	기금 보조액		자체 부담액		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	[서식2]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중구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원사업계획서(사업비산출내역 포함) 2.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사본 3. 법인(단체) 현황 및 2016년 주요활동실적 4. 법인(단체) 임원 및 회원명단					

[서식 2]

지 원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2017년 월 일 ~ 2017년 월 일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5.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일 시 (기 간)	장 소	대 상	세 부 추 진 내 용
세부사업				○ (인원, 활동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
세부사업				○ ○
				○ ○

6. 기대효과

※ 사업목적 달성 시 실제로 단체와 구정발전에 기대되는 효과 기재

7. 사업비 내역서

○ 총사업비 : 원

(단위:원,%)

구 분	계	기 금	자부담	기 타
사 업 비				
비 율	100%	%	%	%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사 업 명	지출항목	금 액 (천원)			산 출 근 거
		계	기 금	자부담	
	총 계				
	홍 보 비	500	500	0	(예시) ◦ 행사리플렛 제작 500장 × 200원 × 5회 = 500,000원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서식 3]

단 체(법인) 현 황

① 단 체 명 :				
② 대표자명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③ 주 소(사무실) 서울특별시 중구 동 번지 호 전 화 : (FAX)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④ 설립목적 (단체(법인)의 회칙(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⑤ 주된사업 (단체(법인)의 회칙(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⑥ 단체연혁 ☐ '81.11. 8 ○○○창립 ☐ '88. 6.15 ○○사단 법인 설립허가 ☐				
⑦ 회 원 수 : 회원수 명 (여성 : 명, 남성 명)				
⑧ 상근인력(고위직 순)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락처
⑨ 사무실 현황 - 사용방법 : 단독사용, 공동사용(공동사용시 단체명 :) - 소유현황				

면적(㎡)	소 유 형 태				
	단체소유		임 차		
	사용기간	명 의	사용기간	임차료/월	명 의
⑩ 유급 상근 직원 : 명 - 연간 급여 총액 : 원 - 급여재원 조달방법 :					
⑪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					
계	회 비	기 지 원 금	기업후원	수익사업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⑫ 재정상태					
연 도	수 입	지 출	재 원		
2016년 예산	천원	천원	- 회원회비(%) - 국가, 지자체보조(%) - 공익법인(재단)지원(%) - 후 원 금(%) - 기업등 협찬(%) - 수익사업(%) - 기 타(%)		
⑬ 2016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 보조금 내역					
사 업 명	지 원 기 관		지 원 금 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⑭ 기 타					

[서식 4]

2016년도 주요활동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사업비 재 원
	◦ 기간 : ◦ 장소 : ◦ 회수/인원(수량) : ◦ 주요내용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기금을 환수함
- 본 사업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 상근 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실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자본적 경상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 교육, 행사 등 참가자로부터 수령하는 참가비는 반드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참가비 수입금을 단체 자부담 금액으로 활용 금지
- 사업비는 사업 선정된 후 제출하는 실행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해서는 안됨 단,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중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기간은 2017. 4. ~ 11. 까지로 하고, 보조금은 사업이 선정된 후에 지급됨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함.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지출항목별 기금 지원 한도액을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신청서류 작성 요령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서식 1]

1. 단체현황

○ 단체명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또는 법인설립허가 공식명칭 기재

○ 대표자 현황

－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 기재

－ 전화 및 휴대폰 :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기재

－ E-mail : 실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소재지 : 구 · 동 · 번지 · 호 · 건물명 · 호수 및 우편번호 기재

○ 전화 및 FAX : 사무실 전화번호 및 팩시밀리 번호 기재

2.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 참여 대상, 사업의 취지, 주요내용 등 간략히 기재

3. 소요경비재원

○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액과 신청기금 및 자부담을 구분하여 기재

○ 사업비에는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은 지원사업 유형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자부담 금액은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예산액 편성

※ 중복, 과장 편성 지양

지원사업계획서 [서식 2]

1. 사 업 명 :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2. 사업목적 : 사업취지 · 배경 · 사업추진 대상 등 기재

3. 사업기간 : 실제 사업추진기간을 기재(2017. 4. 1. ~ 11. 30.이내)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세부사업명(자료조사, 교육, 세미나, 워크숍, 자료집 제작·배포)별 사업기간, 장소, 공익 서비스 제공 대상과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추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단체기념, 월례행사 등 해당 단체 구성원 대상사업 불가**)

5. 세부추진계획 : 사업 기간 내 일정별 주요 추진사항 기재

6. 기대효과 : 사업목적 달성 시 실제로 기대되는(단체와 구정발전) 효과 기재

7. 소요예산

- 총사업비 및 기금, 자부담은 사업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사업비 편성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 세부사업별, 지출 항목별로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산출내역 작성(**※ 예비비, 잡비 등 포괄적인 비목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지출항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
 - 산출내역은 사업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단가·수량 등을 명시하고, 항목별 지출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금액이 없는 경우 복수건적에 의한 금액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산출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는 편성할 수 없음
 - 시설비 · 수선비 · 시설부대비 · 통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임직원 급료, 복리비, 수당 등)
 -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자산구입비(비품, 사무용집기 등),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각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신청사업수 및 금액 등을 검토하여 조정

단체(법인) 현황 [서식 3]

1. 단 체 명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또는 법인설립허가 공식명칭 기재

2. 대표자명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 기재

3. 주 소(사무실)

- 소재지 : 동 · 번지 · 호 · 건물명 · 호수 및 우편번호 기재
- 전화 및 FAX : 사용 중인 전화번호 및 팩시밀리 번호 기재
- 인터넷 홈페이지 : 단체(법인) 홈페이지 주소 기재

※ 약도 1부 첨부(교통편 안내 및 주변 지형지물 중심)

4. 설립목적 : 단체(법인)의 회칙(정관)에 표기된 목적을 간략히 요약 기재
5. 주된사업 : 단체(법인)의 회칙(정관)에 표기된 사항 요약 기재
6. 단체연혁 : 단체(법인)의 창립일, 설립허가일 등 주요 연혁 기재
7. 회 원 수 : 단체(법인) 회칙(정관)에 의하여 구성(등록)된 회원수 기재
8. 상근인력 : 단체(법인) 상근직원을 고위직 순으로 기재 (※ 단체(법인) 조직도 별도 첨부)
9. 사무실현황 : 총 사용면적과 사용형태, 임대사항 등을 기재
10. 유급 상근 직원 : 인원수, 연간급여총액, 급여재원 조달방법 기재
11.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 : 2017년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 기재
12. 재정상태 : 2016년도 재정상태를 재원별로 기재
1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실적
 - 2016년도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간략히 기재(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금액 등)

2016년도 주요활동 실적 [서식 4]

- 2016년도 주요 활동을 사업별로 기재

■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예산편성 지원기준

◦ 아래 항목별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금을 신청할 수 없음

항 목		기 준	지원한도액	비 고
강사료	1급 강사	※ 1일/1회 (1시간 기준) ※ 기본료 : 1시간 기준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단체 대표급, 대학교 조교수 이상
	2급 강사	※ 초 과 : 2시간 기준 ※ 1급 강사에게 최대 지급할 수 있는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40,000원	대학 전임강사 이상
	기타 강사	강사료는 150,000원임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기본료 : 35,000원 ◦ 초 과 : 20,000원	기타 교육기관 등 출강 하는 강사(외래시간강사)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5인이하 : 250,000원 ◦ 6~10인 : 400,000원 ◦ 11인이상 :550,000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5인이하 : 350,000원 ◦ 6~10인 : 500,000원 ◦ 11인이상 : 700,000원		
회의참석비		※ 1일/1회 (3시간 기준) ※ 최대 5회 인정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30,000원	단체 내부자 회의가 아닌 외부 전문가 초청 회의시
홍 보 비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용품 제작 등	지원금 총액의 10% 이내	
단순 인건비		1인/1일	52,000원 이내	◦ 1일 8시간 이내 ◦ 시간당 6,500원 지급 ※ ‘17년 최저임금 6,470원
원 고 료		※ A4(B5)용지 1매 기준 ※ 최대 36매까지 지급 ※ 최대 198,000원 지급	◦ 1~ 10매 : 11,000원 ◦ 11~20매 : 7,500원	단순 강의 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 만 인정
행사 진행	교통비	시내(외) 여비	실 비	워크숍 등 개최시 적용
	다과비	1인	3,000원	
	식 비	1인/1식	7,000원	
	숙박비	1인/1실	실비정산 (상한 40,000원)	
기타경비		- 교재제작비, 교육재료비, 홍보비(팜플렛, 초청장 등) 등은 실비수준 인정 - 행사장 임차료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준 인정 - 연수회 등 진행자 현장답사 출장비 인정(1회에 한함)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101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6년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 전직임용을 위한 정원을 확보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운영직군 전직임용을 위한 직렬간 정원 조정
 - 전직대상 관리운영직렬 정원을 감조정하고 전직예정 직렬(일반직) 정원 증원
 - [감축] 사무운영 2, 전기운영 2
 - [증원] 행정 2, 전기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3396-4513, FAX:3396-8603, 메일:sjg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6급 소계		230	171	3	20	36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위생		1	1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8	276	9	30	53
행정		215	155	6	8	46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계		343	256	2	28	57
행정		190	139	2	5	44
세무		32	32			
사회복지		19	6			13
전산		7	7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4	4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6	122	6	13	55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방호		10	9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5	5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의무		7			7	
6급 소계		230	171	3	20	36	6급 소계		230	171	3	20	36
행정		151	109	3	8	31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5			5		간호		5			5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3, 건축3,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3, 건축3,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보건진료		3			3	
위생		1	1				위생		1	1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현행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6	276	9	30	51
행정		213	154	6	9	44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4, 화공3)		12	12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계		345	256	2	28	59
행정		190	140	2	4	44
세무		32	32			
사회복지		19	6			13
전산		7	6		1	0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0	0			
시설관리		4	4			
운전		6	6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8	276	9	30	53
행정		215	154	6	9	46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3)		14	14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계		343	256	2	28	57
행정		190	140	2	4	44
세무		32	32			
사회복지		19	6			13
전산		7	6		1	0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		4	4			
운전		6	6			

현행							개정안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3)	3	1			2		사무운영(워드)	1	1				
9급 소계	196	122	6	13	55		9급 소계	196	122	6	13	55	
행정	51	21	2		28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전산	2	1		1		
방호	10	9	1				방호	10	9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녹지	2	2					녹지	2	2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건축3,지적4)	14	14					시설(토목7,건축3,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5	5					전기운영(전기)	5	5				
기계운영(기계)	3	2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102호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중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2. 8. ~ 2017. 2. 23.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04마6536외 1대
- 소유자명 : *****서비스코리아외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17. 1. 1. ~ 1. 31.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2-3396-62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 04마6536

관행 정지 상태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명	소유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주소	사용본거지주소							
등록	04마6536	WBAGL61033DM61016	비엠더블유파이낸 셜서비스코리아(주)	110111-2278756	02-2189-0436	010-5585-990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1층 1101호(회현동2가, 남산스테이트타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1층 1101호(회현동2가, 남산스테이트타워)							

용도	불법 운행 된 사유	불법 운행된 상세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록관청명	취하등록 관청명	등록일	해제관청명	해제일	해제 사유	말소등록일
개인용	기타	리스계약자가 불법으로 대포차량으로 매매 추정	리스계약해지, 반환거부, 제3자 점유중으로 점유자 확인 불가함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일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일대	서울특별시 중구		2017.01.11				

* 자동차 등록번호 : 68더6816

등록 정지 상태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명	소유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주소	사용본거지주소
등록	68더6816	WDDHFOCB6BA502285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110111-2614786	02-6456-2486	010-7156-5571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9층(남대문로5가)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9층(남대문로5가)

용도	불법 운행 된 사유	불법 운행된 상세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록관청명	취하등록 관청명	등록일	해제관청명	해제일	해제 사유	말소등록일
개인용	기타	당사 소유의 리스차량이나 현재 계약이 종료되어 소유자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않고 계속하여 운행되고 있어 운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모름	모름	모름	서울특별시 중구		2017.01.09				